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명	한글	홍윤조	일본명		
	한자	洪允祖	이명		
출생연월일	미상		사망연월일	미상	
	본적				
1904년 이전					
주요경력	1898.7.24-1899.2.18	중추원 의관 (대한제국관보, 1897년 7월 27일, 1898년 2월 21일)			
	1904년 ~ 1945년				
	1907.6.28~1910.9.12	일진회 총무원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四, 49쪽; 卷之六, 46쪽; 일한합방비사 하, 726쪽)			
	1907.11	자위단원호회 제7부 위원장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五, 49쪽)			
	1909.10.19	일진회 삼파연합정견협정위원 (같은 자료, 卷之七, 34쪽)			
1911.1.13	시천교 奉敎 (시천교월보, 제1권 제2호, 1911년 3월, 28쪽)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자위단원호회의 조직 및 목적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五, 문명사, 1911, 45쪽.

“(1907년 11월 8일) 지방 폭도를 귀화케 하고 양민을 安業케 할 방략으로 자위단을 결정 공포하다.”

▶ 「자위단원호회 취지」, 흑룡회 편, 『일한합방비사』 상, 원서방, 1966, 379쪽.

“(중략) 그러므로 우리 재경동포는 자위단을 원호하기 위해 위로부터 먼저 자위단원호회를 조직하여 일반의 기맥을 상통하고 방침을 運籌하여 협심일치 稗民을 교화하여 양민으로 삼고, 폭도로 하여금 自首服罪하게 하여 내외동포와 더불어 안락을 누리게 할 것을 도모한다. (중략)

융희 원년 11월 일”

▶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9일 2면, 「자위단 파송」.

“일진회에서 의병을 진압하기로 자위단이라고 실시하여 일간에 각 지방으로 파송한다는 말이 있다더라.”

▶ 『황성신문』, 1907년 11월 10일 2면, 「자위단 조직」.

“각 지방의 불온함을 인하여 진압할 방략을 내각 제대신이 간간히 협의하고 일진회에서도 협의하였다고 각 신문에 揭報한 바이니와 更聞한즉 일진회에서 진압 방침을 협의하였다는데 자위단을 조직하여 각 불온한 지방으로 파송케 한다더라.”

2) 홍윤조와 자위단원호회 제7부의 활동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五, 47쪽.

“(1907년 11월 21일) 지방에 출장하는 제씨와 각도지부회장에게 여비를 출급한 인원 錢數가 아래와 같다. (중략)

7부위원장 홍윤조 508원”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五, 49~50쪽.

“(1907년 11월 23일) 자위단원호회 위원 각부 및 순회총부 일행이 지방으로 각기 출장하였는데 출장지방구역과 인원씨명이 아래와 같다 (중략)

제7부 위원장 홍윤조

위원 이민관, 백낙원, 강근도, 이경로

구역 황주, 상원, 삼등, 성천, 자산, 순천, 은산, 맹산, 영원, 덕천, 회천,
운산, 영변, 박천, 안주”

▶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12일 3면, 「자위단 파송」.

“일진회에서 지방을 진무하기 위하여 협의하였다 함은 이왕 게재하였거니와 그 회에서 자위단을 실시하여 각 지방으로 파송하는 데 (중략) 황해도와 평안남도에는 홍윤조씨를 파송한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19일 3면, 「자위단 파송」.

“일진회에서는 자위단을 설치한다 함은 전보에 게재하였거니와 그 자위단을 십 일부에 나누어 설치하는데 (중략) 제칠부에는 홍윤조 이민관 한익리 백락원 강근도 조용무 이경로 이치로 팔인이오.”

▶ 「명치 40년(1907) 12월 29일 평양헌병분대장 細井 대위 보고」, 내부 경무국 편, 『자위단에 관한 편책』, 1908, 302~304쪽.

“당 관내 자위단 설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중략)

3. 평안남도

본도 일진회지부 평의원 김공택은 자위단원호 제7부위원장 홍윤조 일행과 함께 지난달 하순 이래 상원, 삼등, 강계, 성천, 자산, 순천, 은산, 맹산, 영원, 덕천 방

면에서 권유하였다. 자세히 보도한 것처럼 상원, 맹산, 영원, 덕천 등은 지난번에 폭도가 봉기한 지방으로서 먼저 조직될 예정이다.”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六, 2쪽.

“(1908년 1월 7일) 자위단원호회 제7부 위원장 홍윤조 일행이 무사귀환하다.”

▶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8일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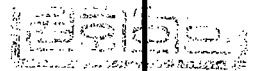
“자위단 부장 홍윤조씨가 덕천군에 가서 군수 안승렬씨와 일본수비대장과 협의하고 자위단을 실시하라 한즉 군수와 수비대장이 반대하기를 이러한 일을 실시하려면 인민의 폭동이 염려된다 하여 우선 읍내만 시행케 하였다더라.”

▶ 『황성신문』, 1908년 1월 16일 2면.

“덕천 개천 등 군에 자위단을 조직할 차로 發向하였던 홍윤조씨가 재작일에 상경하였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23일 3면.

“황해도에 출장하였던 자위단 원호위원장 홍윤조씨가 상경한 후에 해 위원들이 의병이 집류한 곡식을 본주에게 출급하고 이백여 원을 토색하여 네 사람 중의 세 사람만 먹은 고로 한 사람이 불평한 마음이 있어 곧 상경하였다더라.”



2. <특별법> 제2조 제6호(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41쪽.

“(1909년 12월 3일) 하오 7시 30분에 본부 내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이용구가 설명하기를 현금 國과 民의 위태로운 형세가 시일이 절박한즉 부득불 우리 황실을 尊榮케 하고 우리 인민을 永厚福利케 하며 위로 정부로부터 아래로 사회에

이르기까지 더욱 발전하기로 목적하여 만세무궁의 기초를 확정하고 政合邦을 성립케 할 일을 우리 황상폐하께와 대일본 천황폐하의 天聽의 上徹하여 期圖 실행하자 하매 회중이 일치가결하다.”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53~56쪽.

「전국동포에게 포고한 성명서」

“아 우리 2천만 국민의 머리에 충만한 조국정신을 분발하고 큰 소리를 질러 방금 일본 여론의 주창하는 근본적 해결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물결을 막고 파도를 잡자게 하고 우리 대황제 폐하와 대일본 천황폐하의 天聽을 꿰뚫는 一團精誠으로 哀訴하여 우리 황실의 만세 존송하는 기초를 공고히 하며, 우리 민족의 일등 대우하는 복리를 향유하여 정부와 사회를 더욱 발전하기로 주창하여 일대 정치기관을 성립할지면 우리 한국의 보호열등에 있는 수치를 해탈하고 동등정치의 권리를 획득하는 법률상 政合邦이라 하는 일문제이다. (중략)

음희 3년(1909) 12월 4일

일진회장 이용구

동 회 원 백 만”

▶ 『황성신문』, 1909년 12월 5일 2면, 「一進議決」.

“再昨夜에 일진회 본부에서 임시대회를 열고 在京 회원 약 250명과 지방으로 上京한 회원 80여명 합계 330여명의 회원이 합동하여 한·일 양국에 관계된 서류를 대황제폐하께 봉정하고 통감부에 송치할 次로 起草하기를 결의한 후 폐회하였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5일 2면, 「합병한다네」.

“일진회에서는 재작일 밤에 회를 크게 하고 서울회원 이백오십명과 지방회원 칠십여명이 출석하여 한국과 일본을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작일에 대황제폐하께 상주문을 봉정하고 증미통감에게 건의서를 보내었다더라.”

▶ 흑룡회 편, 『일한합방비사』 하, 527쪽.

“(전략) 그런데 이날 밤 총회에는, 총무원 및 지방의 평의원을 합하여 3백여 명

이 출석하였다(이전부터 경성에 소집된 자 80여명). 그리하여 대체로 贊否를 물었더니, 반대자는 겨우 2명뿐이었다.”

▶ 『통감부문서』 10권, 24 통감상경중왕복서류, 「(21)菊池忠三郎에 관한 보고 이첩, 菊池忠三郎에 관한 건(憲機 제471호 사본)」.

“「부속서」 본일 桂후작으로부터 拙者에게 다음과 같은 內訓이 있었다.

一. 일진회 및 기타 합방의견서는 其筋을 受理하고 합방반대의견서는 모두 각하할 것을 了解해야 함. (중략)

三. 일진회가 多年 親日的 操志의 苦節을 守하여 온건 통일한 행동을 취하고 양국을 위해 盡悴하여 온 성의는 능히 了得하고 있다. (중략)

명치 43년(1910) 2월 2일

杉山茂丸”

2) 합방청원운동 진후 홍윤조의 지위와 활동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六, 45~46쪽.

“(1908년 12월 21일) 하오 3시에 총무원회를 열고 (중략) 선거한 임원씨명이 아래와 같다

회장 이용구, 부회장 홍금섭, 평의원장 김택현, 총무원 유학주 원세기 윤정식 한교연 홍윤조 최영년은 의례 仍任하고 김규창 김사영은 신입하고 (후략)”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八, 7쪽.

“(1910년 3월 22일) 하오 1시에 금번 渡韓한 對韓同志會 總代 五百木良三을 환영하기 위하여 명월관에 오찬회를 열고 국민동지찬성회 부회장 서창보와 간사 최정규와 상무조합소장 이학재 및 총무 김세제와 보신사장 백종두를 함께 초청하였으며 본 회장 이용구, 부회장 김택현, 총무원 유학주, 양재익, 한교연, 조희봉, 홍윤조 (중략) 五百木良三이 답사하되, 政合邦문제가 현금 雖未發布이나 내용은 已爲歸決이라 認真하겠고 대금무가 滿韓 중립문제가 有한지라 (중략) 한국 인민의 생활방침은 금년 내에 勝算이 有하오리니 문제를 찬성하는 각 社員은 始終如一히 相愛하심을 務望이라 하고 賓主가 환락하여 동6시에 산회하다.”

▶ 『日韓合邦記念塔建設ニ就テ』, 1934, 15~17쪽, 20쪽.

「日韓合邦記念塔記」

“(전략) 합방의 주창자 일진회 회장 이용구는 속히 일한합방을 성취하여 부하 백만의 회원을 거느리고 만주로 이주하고, 그곳에 근거를 만들어 日滿聯邦을 실현하여 이를 아세아 전역에 미칠 것을 계획한 것으로서 이 일 모두를 송병준 및 우리들[흑룡회-작성자]과 협의하였다. 한국의 여론을 지도하거나 彼我[일본과 한국-작성자] 在朝의 諸公을 움직이고 혹은 청원서를 제출하여 백방으로 고심하여 드디어 1910년 8월 29일의 조서를 맞기에 이른 것이다. (중략) 이에 일한합방기념탑을 건설하여 영구히 명치천황의 유업을 찬미하여 받들고 아울러 이용구·송병준 두 사람을 시작으로 당시 합방에 공헌한 朝野 同志의 이름을 새겨 탑 속의 석실에 씌우므로써 이를 영원히 전한다. (중략)

「일한합방기념탑 내 석실에 봉납된 공로자 방명」

일진회 간부

(중략) 총무원 홍윤조 (후략)”

▶ 흑룡회, 『일한합방비사』 하권, 726쪽.

“「일진회 해산비 분배표」

(중략) 일금 6백원(각인별) 총무원 원세기 한교연 홍윤조 한남규 김사영”

판 단

1. 홍윤조는 1907년 11월경 자위단원호회 제7부위원장을 맡았다. 자위단원호회는 의병활동의 정찰 및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자위단의 설립을 선전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일진회의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홍윤조는 1907년 11월부터 1908년 1월까지 황해도와 평안남도의 각 군에 출장하여 자위단의 조직을 역설하였다. 홍윤조의 이러한 행위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의병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홍윤조는 1907년 6월부터 1910년 9월까지 일진회의 총무원으로 활동했다. 일진회 해산 당시의 해산비 분배표에 따르면 총무원은 회장, 부회장, 평의장, 간사에 이은 지위로서 평의원 및 기타 임원보다 중요한 직책이었다. 홍윤조는 1909년 10월에 대한협회와의 연합을 논의할 삼파연합정견협정위원 중의 1인으로 선임될 만큼 일진회 내부의 중요 간부였다.

일진회는 1909년 12월 4일 이후 일본과 조선의 합방을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홍윤조는 1910년 3월 22일 회장 이용구를 비롯한 일진회 간부 다수 및 대한동지회 총대 이오기(五百木良三), 일진회의 합방청원성명서에 찬성한 국민동지찬성회의 간부 등과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합방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합방찬성단체의 단결을 도모하였다. 이후 일제는 합병을 강제할 때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을 거론하면서 한국인의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09년 12월 6일 합방청원성명서의 발표에 반대하여 부회장 홍공섭을 비롯한 다수의 간부들이 일진회를 탈퇴하였지만 홍윤조는 1910년 9월 일진회 해산때까지 총무원의 직위를 유지한 채 600원의 해산금을 받았다. 해산금 600원은 회장, 부회장, 평의장, 간사에 이은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이었다.

이로 보아 홍윤조는 일진회의 합방청원에 동의했으며 총무원으로서 간부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홍윤조의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홍윤조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2호, 제6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